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2025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15인	재적이사	13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1인

1. 일시 : 2025년 6월 19일 11:00 - 12:00(회의소집통보일: 2025년 6월 9일)

2. 장소 : 대신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

3. 임원 출석 사항

*참석임원

- 이사(12인) : 유승학, 김재국, 고성현, 최영은, 이양수, 박영배, 이희만, 최종남, 이상석, 정명철, 장활민, 추연식

- 감사(1인) : 이기덕

*불참임원

- 이사(1인) : 김정호

- 감사(0인) :

4. 안건

1) 정관 개정에 관한 건

2)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개방)

3) 교원인사의 건

4) 학교현황보고 및 기타의 건

5. 회의내용

1) 1부 예배 후 이기덕 감사의 기도로 시작한 후 서기 고성현이사가 전회의록(2025학년도 제 1차 이사회회의록 2025년 5월 26일 소집)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이양수이사의 동의와 최영은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찬성 12 명, 반대 0명)

2) 정관수정안을 별지유인물로 보고하니 별지 유인물대로 수정하기로 이희만이사의 동의와 이양수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찬성12 명, 반대 0명)

3) 이사선임 및 감사 선임(개방)

(1) 개방이사 선임: 공석인 이사 2명을 선임하기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조성제씨(교육경력), 장병선씨(교육경력), 전대동씨, 신창교씨 총 4명을 추천함에 따라 추천된 인원에게 대해서 투표하기로 결의한 후 투개표 인원으로서기인 고성현 이사, 회계인 최종남 이사로하기로 한후 투표를 진행하니 투표인원 12 명의 이사가 투표하니 조성제씨가12표, 장병선씨가 12표, 전대동씨가 0표, 신찬교씨가 0 표를 얻어 조성제씨와 장병씨가 당선되었고 임기는 고

고성현

최영은

이

기덕

성현이사의 동의와 이희만이사의 동의로 2025년 8월 1일부터 4년간 본법인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하기로 하고 또한 선임된 조성제씨와 장병선씨 모두 교육경력자이므로 교육경험이사로도 선임하기로 하다.

(2) 개방감사인 경성현씨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석인 개방감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강성복씨를 추천하여 투표를 진행하니 투표인원 12명의 이사가 투표하여 찬성 12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임기는 고성현이사의 동의와 이희만이사의 재청으로 강성복씨를 2025년 8월 1일부터 3년간 본 법인 개방감사로 선임하기로 하다.

4) 대신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별지 제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의하기로 하니 동용국씨 재임용에 대해서 김재국이사의 동의와 박영배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고, 정은영씨와 이단비씨에 대한 사직은 받기로 이희만이사의 동의와 최영은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찬성 12명, 반대 0명)

- 아 래 -

(1) 전임교원 재임용

연번	학과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세부전공	임용기간	임용구분
1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동	19	사회복지학	2025.07.01.~2025.08.31 (65세 정년)	정년트랙

(2) 전임교원 의원면직(사직)

연번	학과	직위	성명	세부전공	사직일자	비고
1	상당영어학부	부교수	정	상당	2025.04.30	의원면직

(3) 비전임교원 의원면직(사직)

연번	학과	초빙분야	성명	사직일자	비고
1	교양학과	특임	이	2025.02.28	의원면직

5) 총장이 학교재학생 현황, 외국인 학생 수급계획, 교원인사관련 변동현황, 강의실 개선관련 현황 등 제반적인 학교현황에 대해 보고하다.

6) 본 회의 회의록 간서명을 위해 고성현이사, 최영은이사, 이기덕감사로 하기로 김재국이사의 동의와 이희만이사의 재청으로 가결하다.(찬성 12 명, 반대 0명)

7)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고성현이사의 동의와 최종남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최영은이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치다.(찬성 12 명, 반대 0명)

고성현 최영은 이기덕

2025. 6. 19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이사회

이 사 장	유 승 학	유승학
이 사	김 재 국	김재국
이 사	고 성 현	고성현
이 사	최 영 은	최영은
이 사	이 양 수	이양수
이 사	박 영 배	박영배
이 사	이 희 만	이희만
이 사	이 상 석	이상석
이 사	최 종 남	최종남
이 사	정 명 철	정명철
이 사	김 정 호	김정호
이 사	장 활 민	장활민
이 사	추 연 식	추연식
감 사	이 기 덕	이기덕

고성현

최영은

이기덕

【붙임4】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정관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6조(수익사업)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사업 2. 기타	제36조(수익사업)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사업 2. <u>학교 교육관련 부수되는 서비스 사업</u> 3. <u>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u> 4. <u>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 관련 교육 서비스업</u>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교육서비스사업관련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② 제42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휴직교원의 처우) ② 제42조 제2호 내지 <u>제4호와 제6호, 제8호 내지 제13호의</u>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u>제42조 제7호, 제7의2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다.</u>	관련 법령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성현

최병욱

이기락